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지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453 발의연월일: 2025. 1. 13.

발 의 자:조지연·신성범·박덕흠

김형동 • 이인선 • 최수진

고동진 • 우재준 • 임이자

김도읍 · 김장겸 · 엄태영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청년의 연령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15세 이상 29세이하로 규정하고 있음. 그러나 「청년기본법」에서는 청년을 19세이상 34세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, 「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」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범위를 15세이상 34세이하로 규정하는 등 법령마다 청년 연령이 달라 혼선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. 아울러, 청년들이 대학 졸업 후 첫 취업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약 1년에 달하는 등 노동시장 진입이 점점 늦어지고 있음.

이에 「근로기준법」상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최저 연령이 15세임을 감안하여 청년 연령의 하한은 15세로 유지하되, 상한 연령은 타법령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34세로 확대하고자 함(안 제2조제1호).

법률 제 호

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"을 "15세 이상 34세 이하인"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		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		
1. "청년"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	1		
람으로서 <u>대통령령으로 정하</u>	<u>1</u> 5세 이상 34세 이하		
<u>는 나이에 해당하는</u> 사람을	<u>인</u>		
말한다. <u><단서 신설></u>	<u>다만, 다른 법령과 조례</u>		
	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		
	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		
	<u>따를 수 있다.</u>		
2. (생략)	2. (현행과 같음)		